

한·중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 비교연구

장 미 나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박사졸업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한·중 무형문화유산의 보호현황 | Abstract |
| IV. 한·중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정책
특징비교 | |

I. 서론

급변하는 문화의 시대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적합한 사회 환경을 창출하여 부동한 민족, 공동체, 지역의 우수한 문화의 전통을 전승시키고,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외적으로는 세계 각국 국민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인류의 상호 소통, 이해, 단결과 협작을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유형문화유산만으로는 각 민족 역사문명의 연속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진정한 의미의 전통문명의 연속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에 의해 공동으로 전승되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에서 전통무용을 전공한 중국 유학생으로써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으며 한 번 소실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깨달아 본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동양이라는 공통적인 문화기반을 가진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여 왔고, 중국은 2004년 8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중국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면서부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양권에 포함되는 나라이지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정책 배경과 실정이 서로 다르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나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정책에 대하여 연구·분석함으로써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두 나라의 보다 나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로써 향후 두 나라의 보다 나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을 모색하는 데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는 앞으로의 한·중 문화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두 나라 미래의 문화예술교류에도 양국 간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법률적 제도 변천과정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제강점에서 해방 후 1961년까지의 준비기를 거쳐 1962년 1월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성립되었다. 이어 “문화재보호법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 공포되고 1964년 12월부터는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보호제도의 변천사는 그 준비기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일곱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¹⁾

제1기(1945-1961, 정책성립의 준비기)는 1945년 해방 후부터 1962년 1월 10일

1) 이장렬(2006. 5. 30). 「무형문화재정책 진단과 개선방향」, 손봉숙의원 주최, 『무형문화재의 21세기 개혁과제와 방향』토론회, pp.30-33.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기 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준비작업이 시작되고 국립국악원과 국악사양성소가 개설되며 전국적인 규모의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시작되었다.

제2기(1962-1969, 종목지정제도의 성립과 계몽활동)는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된 후 '60년대 말(정확하게는 보유자인정제도가 입법된 1970년 8월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일제강점기 제정법률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08.09 제령 제6호)의 폐지와 동시에 그 대체법으로 한국 스스로 만든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되었고,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12월부터는 종목지정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국가적인 계몽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요즘 보유자의 별칭으로 사용되는 “인간문화재”라는 용어도 그런 맥락에서 이 시기에 한 중견 언론인에 의해서 명명되어졌고 보유자에게는 지정된 종목에 대한 년 1회 이상의 공개의무 부여와 함께 보조금 지원조항도 법에 삽입되었다.

제3기(1970-1982, 보유자인정제도의 성립과 추진)는 보유자인정제도가 시작된 1970년 8월 이후 국가주도에 의한 전수교육제도가 시작된 1982년 말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1971년 8월 26일 ‘해녀노래’를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한 것을 필두로 무형문화재의 지정범위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었다. 1964년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를 비롯하여 그동안 지정종목들에 대한 보유자 인정이 1971년 2월 11일자로 이루어졌다.

제4기(1983-1989, 전수교육제도의 성립과 선양)는 전수교육제도가 시행된 이후 '80년대 말까지의 시기이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가 일본과는 다른 큰 특징의 하나인 국가주도의 전수교육제도가 이 시기에 시행되었다. 개인보유자 인정에 이어 보유단체 인정제도가 실시되었고 단체유지비도 지급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축제, 1986년의 아세안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에 힘입어 무형문화재의 위상이 부상하면서 전통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도 동반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5기(1990-1999, 전수교육관리의 자율화)는 '90년대로서 무형문화재 전승의

내적, 외적인 변화바람이 일면서 시대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오직 장인정신으로만 버텨오던 보유1세대들이 차츰 타계하고 전승 2세대들이 이어받으면서 전승활동 공간이 변하거나 사라졌고 전승분위기도 달라졌다.

1993년 5월, 문화재관리국은 “중요무형문화재 관리개선계획”을 시행방침으로 발표하면서 곧이어 일부 종목에서 보유자후보를 일방적으로 선정·통보하였다. 이에 몇몇 대중적 인기 보유자들은 문화재관리국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보유자후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언론들이 가세를 하자 1년 후 문화재관리국은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전수교육을 보유자에게 일임해버리는 과잉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유자들의 전수교육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원은 하면서 관리감독은 보고서의 폐지와 함께 방치되었고 이수증발급권까지 보유자의 자유재량에 맡겨버린 것은 개악적인 정책변경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90년대 내내 전수교육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무형문화재 제도를 다시 1994년의 “자율화” 조치 이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문화재관리국은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면서 시끄러운 90년대 를 보내게 된다.

제6기(1999-2001, 개방지향적 정책개혁과 추진)는 새로운 2000년대의 무형문화재정책개혁 발표가 있는 1999년 12월부터 새 정책의 추진이 침체기로 접어든 2002년 전반기 이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무형문화재정책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함께 1년 가까운 준비과정을 거쳐 1999년 12월 10일에는 새로운 2000년대에 부응하는 무형문화재정책을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발표하게 된다. 우선, 평생연금격인 월정전승금은 신규보유자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종목과 보유자인정을 확대하며 명예보유자제도를 시행하는 등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중요한 개혁 핵심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7기(2002-현재, 개혁정책의 퇴색과 새로운 모색기)는 2002년에 접어들면 기존 몇몇 보유자들의 기득권적 문화권 수호운동의 전개와 함께 개혁정책이 침체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에 더하여 문화재청은 2004년 1월, 2000년 이후 인정된 신규보유자들에게도 연금식 월정액을 인상지급(월 100만원)하는 선심행정을 단행하게 된

다. 이는 모처럼 마련한 개혁정책을 다시 1999년 말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하는 '제2차 개혁' 조치인 셈이다. 현재는 '90년대 내내 진통을 겪던 무형문화재정책 개혁에 대한 고민을 다시하면서 새로운 모색의 길을 찾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 무형문화재정책사를 요약하면 한국적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근간인 종목지정과 보유자인정, 그리고 전수교육제도는 대개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80년대 초에는 그 골격이 이루어졌다. '90년대는 기득권을 소유한 보유자와 정부간 갈등이 고조된 시기,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약 2년간은 중요한 개혁정책이 추진되나 2002년 이후 다시 침체기로, 그리고 2004년의 개혁정책 후퇴기, 그리고 현재는 새로운 모색기로 대별(大別)할 수 있겠다.

2.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사회적 상황과 정책적 방향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이후, 특히는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를 맞아 중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 1950년대 초부터 국가에서는 관련부문과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전통 희곡(戲曲)의 극의 종류(劇種)와 작품들을 발굴하고 보호하였으며, 민간전통예술, 중의중약(中醫中藥), 소수민족의학 등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량의 민간예술박물관도 설립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이전 중국에서는 흩어져 있던 대중문학과 예술에 대해 광범위한 발굴과 수집, 그리고 조사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작업은 사회의 문화 및 예술단체들이 수행했다. 이 시기에는 전체 관리를 위한 통합된 계획이 없었으며 또 유산의 보존보다는 이용에 중점이 두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유산의 보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1982년 최초로 역사유물보호를 규정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 文物保護法)”을 제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원칙에는 무형의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84년부터 1990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8백만원(yuan)과 지방정부에서 약 1억원(yuan)을 지원하고 5만 명 이상의 문예(文藝)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문화부와 국가

민족사무위원회, 그리고 중국문학예술가연합회 등 기관에서 연합으로 “문화장성(文化長城)”이라는 총 10집에 달하는 대형의 “중국민족민간문예집성지서”를 집성함으로써 대량의 귀중한 예술자료들을 발굴하여 보존하였다. 1990년대에는 중국의 운남(雲南)·귀주(貴州)·복건(福建)·광서(廣西) 등 성(省)과 지역에서 민족민간전통문화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제정하였고, 녜하(寧夏)·강소(江蘇)에서도 민간미술과 민간예술의 보호를 위한 지방법규를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 정부에서는 전통공예미술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200여명의 “공예미술대사(工藝美術大師)”를 명명하여 소실 위기에 놓인 전통공예미술을 위한 보호 작업을 추진하였다.

1998년도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위원회(教科文委員會)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입법 작업을 시작하여 2003년 11월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민간전통문화 보호법 초안”의 작성을 완성하였다. 2003년 중국 문화부와 재정부에서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중국문학예술가연합회 등과 연합하여 중국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을 둔 “중국 민족민간문화 보호공정(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을 실시하였다. 이 계획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의 시간을 들여 실시되어지며,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효율적인 체계를 건립하고,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과학화·규범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려고 한다.²⁾ 그리고 2004년 8월,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차 회의에서는 중국이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가입하는 것을 공식화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민간 전통문화 보호법 초안(中華人民共和國民族民間傳統文化保護法草案)”의 명칭을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 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法)”으로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전문소조도 성립하여 입법(立法)의 과정을 가속화하였다.³⁾

2005년 3월 26일 국무원에서는 “우리나라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작업을 강화할

2) 王文章(2006). 『非物質文化遺產概論』, pp.168-174.

3) 朱兵(2006). 『背景, 問題與思路 - 關於我國非物質文化遺產立法的思考』, 『中國非物質文化遺產叢書 第1輯』.

데 관한 의견(關於加強我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的意見)”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22일 국무원에서는 “문화유산 보호 작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關於加強非物質文化遺產保護的通知)”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국가 최고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작업에 대하여 발표한 권위성을 가진 지도적 의견이다. “의견”에서는 보호 작업의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보호 작업의 목표에서는 “전 사회의 노력을 이끌어내어 비교적 완비(完備)하고 중국특색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제도를 점차적으로 건립함으로써 중국의 귀중하고 소실될 위험에 직면하고; 역사·문화·과학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전승되게 하는 데 있다”고 제시했다. 보호 작업의 지도방침은 “보호를 위주로 하고 구급(搶救)을 첫 자리에 놓으며 합리하게 이용하여 전승·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보호 작업의 원칙은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며, 직책을 분명히 하고 협력(合力)을 형성시키며, 멀리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중점과 전반적인 면을 결합하여 실제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무원의 “의견”에 따라 2005년 6월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국가급(級) 무형문화유산 명록(名錄)신청과 평가·심사 작업을 시작하였다. 전문가 평가심사위원회의 평가·심사를 거쳐 처음으로 국가급 명록(名錄) 501개의 종목을 확정하여 2005년 12월 31일에 사회에 공시(公示)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문화부(文化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교육부(教育部),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 재정부(財政部), 건설부(建設部), 국가관광국(國家旅游局), 국가종교국(國家宗教局),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 등 9개 기관의 회의를 통하여 518개 종목으로 조정되어 국무원의 심사를 받았으며, 2006년 5월 20일 국무원의 허락을 받은 뒤 공식적으로 전국에 발표되었다.

2006년 10월 25일, 중국 문화부회의에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보호와 임시실행방법”을 심사·통과하였고, 2006년 12월 1일부터 실행하기 시작했다. 2007년 6월 5일, 중국 문화부에서는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대표성 전승인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에는 민간문학·잡기와 경기·민간미술·전통수공기에·전통의약 등 5가지 분류에 속하는 전승인 226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문화부 부장 주화평(周和平)의 발표에 따르면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록(名錄)의 신청은 200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2차 신청자격은 성(省)급 명록(名

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만이 가능하다고 한다.⁴⁾ 중국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록(名錄)은 중국 국무원에 의하여 2008년에 발표될 예정이다.⁵⁾

III. 한·중 무형문화유산의 보호현황

1.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보호현황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은 무형문화재 정책으로 대표된다. 한국의 무형문화재는 기·예능을 중심으로 하며 이들 기·예능 외에 신앙과 의례와 의식의 일부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⁶⁾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무형문화재로 나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64년 12월 종묘제례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이래 2007년 10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능종목 63개, 기능종목 50개 등 총 113개 종목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총 204명의 보유자와 57개의 보유단체가 인정되었다.

한국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을 전수하도록 하여 전통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지정기준은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이 되는 범위를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연극: 인형극, 가면극, (2) 음악: 제례악, 연례악, 대취타, 가곡, 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 산조, 농악, 잡가, 민요, 무악, 범패, (3) 무용: 의식무, 정재무, 탈춤, 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공예, 피모공예, 금속공예, 골각공예, 나전칠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공예, 직물공예, 염색공예, 옥석공예, 수, 매듭공예, 복식

4) 현재 전 중국에는 총 18개의 성(省)에서 이미 성급 명록(名錄)을 갖고 있음.

5) 國務院(2006). “國務院關於公布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的通知”.

6) 문화재보호법 제2조.

공예, 악기공예, 초고공예, 죽공예, 무구공예, (5) 기타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⁷⁾

한국에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무형의 기·예능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무형적인 존재를 주체화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은 현존 인에 의하여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지정하고자 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현존이 절대적인 요건이 되며, 이러한 무형문화재의 기·예능보유자를 ‘인간문화재’⁸⁾라 부른다. 연극, 의식 등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당해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유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무형문화재의 종목은 “지정”한다고 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단체는 “인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함께 국가지정 문화재의 종별(중요무형문화재), 지정번호(지정 순서에 따라 붙인 번호), 명칭, 보유자의 성명, 성별,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년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등을 고시하고 있다. 현재의 지정 기준과 그것의 내용은 시·도에서 지정을 추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지정·건의 등에 의존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문화재청은 전

7)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2호 및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1] 참조.

8) 일생을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재위원을 역임한 예용해(芮庸海, 1929. 1. 20. 경북청도 출생, 1995. 4 작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 전 한국일보 신문기자, 전 민속학자 - 전통공예,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1960년 초에 한국일보에 실렸던 ‘인간문화재’라는 이름으로 50회동안 기획연재를 하면서 처음 사용한 말로 일반 국민이나 관련 정부기관이 ‘무형문화재’나 ‘인간문화재’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깨우치고 그 보존을 위해 제도적·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구체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1963년 어문각에서 ‘인간문화재’란 제목의 단행본을 내었고, 1976년에는 일본어로 번역하여 『韓國の人間國寶』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결국 인간문화재란 말은 고인이 되신 전 문화재위원 예용해 선생이 주창하고 이에 수긍한 언론들이 용어를 수용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이 심어져 있는 것이다.

국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여 소멸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모두 찾아 보호·전승 방안을 강구하고 그 기·예능인의 기능 수준과 전승이력을 조사한다. 이러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을 적극 추천하고 분야별 우수한 전승 기능자 인력을 종합관리하면서 기·예능의 활동과 기량을 해마다 측정하고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현황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는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2004년 중국이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하면서 부터였다.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이란 ‘전통문화 표현 형식과 문화공간 등 역사·문화·과학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과 성(省)·시(市)·현(縣)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나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현황은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총 518종목이 지정되었고 총 226명의 전승인이 인정되었다. 현재는 구체적인 보호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지정목적은 역사·문화·과학 가치를 겸비한 중국 특색있는 무형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가치를 가진 민간전통문화 표현형식과 문화공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역사·예술·민족학·민속학·사회학·인류학·언어학·문학 등 방면에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⁹⁾ 지정범위는 아래와 같다.¹⁰⁾

- (1)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口傳)전통 및 표현,
- (2) 공연 예술, (3)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祭奠), (4)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5) 전통 공예 기술, (6) 공연 예술과 관련된 문화공간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지정에서는 이러한 지정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또

9) 王文章(2006). 『非物質文化遺產概論』, p.398.

10) 中國文化部(2005). “文化部關於申報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作的通知”.

다시 10가지로 세분화된다. 10가지 분류에는 민간문학(民間文學), 민간음악(民間音樂), 민간무용(民間舞蹈), 전통희극(傳統戲劇), 곡예(曲藝)¹¹⁾, 잡기와 경기(雜技與競技), 민간미술(民間美術), 전통수공기에(傳統手工技藝), 전통의약(傳統醫藥), 민속(民俗) 등을 포함하고 있다.

IV. 한·중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정책 특징비교

한국과 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두 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역사와 경험도 서로 다르게 형성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두 나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발전과정, 보호체제(體制), 종목지정의 분류특징, 보호원칙 등 특징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한·중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의 발전과정

아시아에서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며, 일본은 1950년대부터 그리고 한국은 1960년대부터 무형문화유산 정책을 펴 온 나라이다. 두 나라 중에서도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일본에 비해 더욱 더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¹²⁾

1964년에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운영 된지 근 50년이 되어가는 오늘날,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총 113종목이 지정되었고, 3,830(2)명의 전승자가 인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보유자 204(1)명, 보유단체 57단체, 전수교육조교 306(1)명, 이수자 3,242명, 전수장학생 78명을 포함하고 있다.

11) 곡예(曲藝)란: “창(唱)” 즉 부르는 것을 위주로; “坐唱(좌창) - 앉아서 부르기, “站唱(참창) - 서서 부르기, “走唱(주창) - 춤을 추면서 부르기 등 세 가지 형식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예술의 한 형태.

12) 임돈희(2002).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무형문화재의 보존현황과 전승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27집, p.590.

물론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도 현재까지 단순히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지만 세계적 범위 내에서 볼 때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은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큼 앞서 있는 수준이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존, 기능보유자의 관리 등 정책은 상당히 정교하고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한국은 현재 국제사회의 무형문화재 정책의 중심국가 역할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관리국의 공동주최로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 1차 유네스코 국제연수 워크숍'이 한국에서 열렸으며¹³⁾, 그 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워크숍을 총 7차례 개최하였는데, 절반이 넘는 4차례의 워크숍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하여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인간문화재 제도 영문 지침서 개정판을 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이 무형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¹⁴⁾ 유네스코에서 기획한 무형문화유산 학술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한국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서 출간된다는 사실은 한국이 무형문화 정책의 국제적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만의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체계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정책을 갖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는 아직 시작점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작업은 자료수집과 종목지정을 중심으로 한 초기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초기 보호 작업 과정 속에서 중국은 중국 실정에 어울리는 보호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상황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중국 정부에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구급과 보호 작업을 진행하여 일정한 보호방법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 중국 정부에서 발표·실시한 “중국 민족민간문화 보호공정”을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2004년 8월,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3) 한국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1차 유네스코 국제연수 워크숍(1998, 10. 13-20. 자료집), p.156, p.8.

14) 임돈희. 「국제무형문화유산학술지 발간의 의미」, 『민속소식』 128호(국립민속박물관, 2006년 4월호), p.11.

11차 회의에서 중국이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을 공식화하고 기존의 ‘보호초안’의 명칭을 “중화인민공화국 비 물질문화유산 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法)”으로 변경함으로써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의 본격적인 보호가 실시되었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법규문건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작업을 실시한 결과 2006년 5월 20일에 중국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총 518종목을 지정하였고, 2007년 6월 5일, 중국 문화부에서는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대표성 전승인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는 전승인 226명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의 구급과 보호를 위하여 대량의 효율적인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한국과 같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선행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아직도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2. 보호정책 체제(體制)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제24조 1항을 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헌법 제9조의 내용을 ‘무형문화재’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 무형문화재 보호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무형문화재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제2항을 보면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¹⁵⁾고 규정하고, 제3항과 4항은 이를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한 전수교육에 관한 규정이며, 국가가 전수교육의 실시를 보유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보유자는

15) 문화재청. www.cha.go.kr/

국가와 동시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은 1982년 12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주도의 전수교육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994년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개정시 전수교육을 보유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¹⁶⁾ 이와 같이 전수교육 조교는 국가에서 선정하지만 전수교육은 보유자의 자율적 시행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국가주도 전수교육제도’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의 시·도 지정무형문화재는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내의 무형문화재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즉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보존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후, 15일 이내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체제는 기타 문물 행정관리체제와 마찬가지로 소속지역에서 관리하고 등급을 구분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에서는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기구와 보호·연구를 위한 연구기구를 설립하였으며, 일정한 업무능력을 갖춘 전문그룹과 문물보호 관리체제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현행 관리체제 중 정부 주도의 중앙관리기구는 중앙문화부에서 책임지고 ‘부제련석회의제도(部際聯席會議制度)’를 건립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작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부문과 각 관련기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관련 대학교·기업·사회단체 등 각 방면에서의 역량을 흡수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작업을 같이 진행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전문가자문기구와 검증·감독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지방 관리체제는 주로 본 행정구역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작업에 대한 조정·감독을 맡고 있다. 종목의 신청과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심사과정에는 현지의 관리체제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종목을 신청할 경우, 해당 종목은 우선 성급(省級) 문화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지만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으로의 신청이 가능해 진다.¹⁷⁾

현재 중국에서는 국가·성(省)·시(市)·현(縣) 등 4급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제

16) 손봉숙(2006).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16.

17) 朱兵(2006). 「背景, 問題与思路 關於我國非物質文化遺產立法的思考」.

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전국 각 성(省)·시(市)에서는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 명록(名錄)을 만들어 해당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심사와 보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목의 보호과정에서 성급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에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실제적인 보호 작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무원 문화행정기관에서 비준(批准)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두 나라 모두 국가주도의 보호체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무형문화재로 나뉘고, 중국은 국가급무형문화유산과 성(省)·시(市)·현(縣) 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분류 된다. 그리고 두 나라 보호체제 실행과정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한국은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의 지정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보존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만 중국은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우선 성급(省級) 문화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지만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으로의 신청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보호체제의 차이점은 두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근거한 것이며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별도로 진행하는 체제는 더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여 보호하기 위함이고, 중국의 위와 같은 체제는 결과적으로 국가급과 성급(省級)이 동일한 종목을 지정함으로써 지정된 종목의 실제적인 보호를 해당지역에 맡겨 더욱 효율적인 보호를 진행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3. 무형문화유산 종목지정의 분류특징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제도상의 무형문화유산 개념과 범주는 상이하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상의 무형문화재는 기술과 예능을 중심으로 하고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도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는 기·예능을 포함한 외에 무형문화유산과 관계된 유형의 도구와 공간적 환경, 언어와 신앙, 생활관습 등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한·중 두 나라의 무형문화유산 종목 지정의 범위와 종목분류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이 되는 범위는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술과 예능을 중심으로 6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것은 또 다시 음악·무용·연극·놀이와 의식·무예·공예기술·음식 등 7가지로 세분화되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된 후 붙여지는 지정번호는 그 지정순서에 따라 배열되고 있다.

한국의 지정범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의 지정범위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구체적인 종목분류 작업에서 중국 전통문화예술의 기본특징을 바탕으로 총 16가지 기본분류 지정번호체계를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지정번호체계를 기초로 중국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서는 크게 10가지(민간문학·민간음악·민간무용·전통희극·곡예·잡기와 경기·민간미술·전통수공기에·전통의약·민속 등)로 분류하여 종목을 지정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각 사회구역, 공동체(때로는 개인)들에서 문화유산의 구성부분이라고 간주하는 각종 사회실천, 관념의 표출, 표현형식, 지식, 기능 및 도구, 실물, 수공업제품과 문화장소” 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의 정의에서 언급했던 “문화장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장소(The Cultural Space)”는 사실 “문화공간”이기도 하며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단어의 다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일부 국제문건의 중문(中文) 번역에서 이 단어는 “문화공간”으로 지칭되었고, 현재 중국에서는 “문화장소”보다는 “문화공간”으로 공식화 되었다.

“문화공간”은 무형문화유산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서 상술된 무형문화유산에 포함되는 5가지 분류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네스코에서 2001년에 발표한 “제1차 인류 구도와 무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록(名錄)”의 총 19종목에서 5종목이 “문화공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⁸⁾

18) 2001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명록(名錄)” 중에 “문화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 5종목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령형제회 문화공간’, 기니의 ‘소소발라 문화공간(The Cultural Space of Sosso-Bala in Nyagassola)’, 모로코의 ‘제마 엘프나 광장의 문화공간(The Cultural Space of Jemaa el-Fna Square)’, 러시아의 ‘세메이스키에 문화공간과 구전 문화(The Cultural Space and Oral Culture of the Semeiskie)’, 우즈베키스탄의 ‘보이순 지역 문화공간(The Cultural Space of the Boysun District)’ 등이다.

그리고 2003년에 발표한 제2차, 2005년에 발표한 제3차 인류구두와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작 명록(名錄)에도 “문화공간”에 포함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이 있었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에서 “문화공간”은 사실 아주 중요한 분류이며, 유네스코에서 분류한 5가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종목의 지정에서는 “문화공간”이 이미 하나의 분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분류체계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서 포함한 5가지 분류와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6번째는 위에서 언급했던 “문화공간”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문화공간”을 무형문화유산 중의 기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민속학자들과 민족민간문화예술 연구원들은 과학적이면서도 중국 실정에 어울리고 실용적인 무형문화유산의 지정번호체계를 건립하였다.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지정번호는 중국 국가통계 및 표준화관리 연구기구·문화부 관련부문, 그리고 전문가 등의 의견과 국제적으로 통행하는 지정번호방법 등에 맞추고, 또한 컴퓨터 검색과 디지털 관련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되었으며, 단계적 분류법과 숫자부호 형식을 이용하였다.¹⁹⁾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지정번호’는 무형문화유산을 두 단계로 나누었으며, 1단계는 16가지 기본 유형으로 분류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속언어 (2) 민간문학 (3) 민간미술 (4) 민간음악 (5) 민간무용 (6) 희곡(戲曲) (7) 곡예(曲藝) (8) 민간잡기 (9) 민간수공기에 (10) 생산상업습속(生産商賈習俗) (11) 소비습속(消費習俗) (12) 인생예속(人生禮俗) (13) 세시절령(歲時節令) (14) 민간신앙 (15) 민간지식 (16) 유희·전통체육과 경기

이러한 16가지 1단계의 기본 분류는 또 다시 2단계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민간음악’은 민요·악기·무용음악·희곡음악·곡예음악·기타 등 6가지로 세분화되며, ‘민간무용’은 생활풍습무용·세시가절(歲時佳節)무용·인생예의(人生禮儀)무용·종교신앙무용·생산풍습무용·기타 등 6가지로 세분화 된다.

중국 지정번호의 제정은 학술상의 전승에 있어서 정연한 질서가 유지되며, 비교적 과학적이고, 뚜렷한 실천성과 활용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만의 특색을

19) 中國藝術研究院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國家中心編(2005). 『(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普查工作手冊), p.19.

갖춘 번호체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정번호 분류는 1989년 유네스코의 “민간창작 보호 건의안”에서 예를 들었던 “언어, 문학, 음악, 무용, 유희, 신화, 예의, 습관, 수공예, 건축과 기타예술” 등 민간창작의 표현형식 분류방법과도 일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지정의 분류특징을 비교해 본 결과 우선 지정범위를 보면 한국은 기·예능과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도구를 지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예능을 포함한 외에 무형문화유산과 관계된 유형의 도구, 공간적 환경, 언어와 신앙, 생활관습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지정번호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년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의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이뤄진 지정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4.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원칙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원칙 특징은 원형보존주의, 중점보호주의, 국가주도의 전수교육제도 및 활용주의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원칙은 진실성(眞實性)원칙, 정체성(整體性) 원칙, 이인위본(以人爲本) 원칙, 지속가능성(可持續性) 원칙, 합리이용(合理利用) 원칙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의 원형보존원칙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천명된 것이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2에서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 1항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을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형보존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 시에 기·예능 심사 기준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리고 중점보호주의 원칙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제정 당시부터 적용된 제도로, 정부가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보호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정책의 일종이며, 한국의 국가주도의 전수교육제도는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는 전수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한국의 전수교육은 보유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전수 기간과 전수교육조교 선정, 이수증 발급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하는 등 전수교육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제24조 1항을 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헌법 제9조의 내용을 ‘무형문화재’로 구체화하고 있다.²⁰⁾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징에는 활용주의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무형문화재는 보존만이 목적이 아니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창조력 신장에 있으며 이로서 국민전체의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거시적 목적이 있다.

새 문화창조에 기여하지 못하는 전통이란 먼지가 자욱한 그야말로 ‘옛날 예술’로 전락되어, 국내적으로는 관중들의 관심이 식어질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예술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한국의 전통예술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정예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전통예술인들의 예술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²¹⁾ 그러므로 보존의 기본 원칙은 “활용할 수 있도록”²²⁾하는 것이다.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원칙중의 진실성원칙의 목적은 현대화의 발달로 인해 전통문화의 원생태적 성격이 사라지기 전에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과정에서 진실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원형에 대한 진실성은 무형문화유산의 실제 검증과정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총체성(總體性) 원칙의 “총체성 보호”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 자체와 그 생존공간에 대하여 전체적인 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총체적 보호의 또 다른 의미는 문화유산 및 생존환경에 대하여 총체적 보호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른바 총체성은 곧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전부의 내용과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전승자와 생태환경도 포함된다. 이것은 즉 무형문화유산을 전체적으로 중시하고 다방면이고 종합적인 보호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세 번째 보호원칙은 이인위본(以人爲本) 원칙이며, 이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사람(관련 단체)

20) 손봉숙(2006).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15.

21) 김순규. 『예술문화진흥정책의 전개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문화정책논총』제7집, p.99.

22)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의 현실적 요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이것은 경제의 발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정당한 필요성에서 온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거나 사람들의 생활수준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다른 하나는 오직(특정한 사회구역) 사람(보유자나 보유단체)만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이룰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임을 믿어야 하며, 그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민족의 문화가 전승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무형문화유산 종목 자체를 중시하는 동시 반드시 이러한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보유자와 그들의 생활·사고·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몇몇 인정된 보호자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동일 문화공간속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몇몇 인정된 보유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타 현지인들도 보호에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지속(持續)가능성 원칙으로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단기적인 작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보호 종목이 확정되기만 하면 보호 작업은 장기적으로 시간적 제한 없이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대손손 전승되면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작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효율적 보호”와 “합리적 이용”은 보호 작업이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합리적 이용 원칙의 의의는 민간전통문화의 합리적인 이용·개발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 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성장도 촉진함으로써 문화와 생산력의 공동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원칙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원형보존주의 원칙은 중국의 진실성(眞實性) 원칙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중국의 진실성 원칙의 목적을 보면 ‘원생태(原生態) 적인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원생태’는 ‘기존의 형태’로써 한국의 ‘원형’과 같은 개념으로 씌어 진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중 두 나라 모두 ‘원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도에 규정한 바가 없으며, 만약 앞으로 두 나라에서 ‘원형’에 대한 기준을 제도에 명시한다면 결과적으로 서로 상이할 수도 있다.

둘째, 한국의 중점보호주의와 중국의 총체성(總體性) 원칙을 통하여 두 나라의

보호기준과 보호범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중점보호주의는 여러 무형의 문화적 소산 중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목’만을 선택하고 그 종목에 해당하는 보유자를 인정하여 보호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등재에 더불어 소실될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전부의 내용과 형식을 포함하여 보호하는데 여기에는 전승자와 생태환경도 포함된다.

셋째, 한국의 ‘활용주의’와 중국의 ‘합리이용 원칙’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한 같은 기준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한국은 ‘국가주도 전수교육제도’로 한국 무형문화재 보호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람을 근본으로 여기는 ‘이인위본(以人爲本) 원칙’과 ‘지속가능성 원칙’으로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형보존’과 ‘활용’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문화유산의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 과거의 전통을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허용할 것인가’, 또한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²³⁾의 문제는 앞으로 중국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있어서도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다 앞서 경험하고 고민했던 한국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관리뿐만 아니라 세계 수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V. 결 론

21세기의 국제사회에서 문화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문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무형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

23) 임돈희(2004). “인간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경험과 쟁점”, 세계박물관대회 기조 연설.

대되었으며 문화유산 정책도 유형문화유산 중심에서 무형문화유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서구에 비해 비 서구국가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여 왔고 현재는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큼 앞서 있는 수준이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4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가입하면서부터 기존의 문물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던 민족민간문화의 명칭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가속화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양권에 포함되는 나라이지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배경과 실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두 나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현황·보호정책 특징에 대하여 검토·분석해 보았다. 위에서 검토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산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에 있어서 한국은 ‘무형문화재’, 중국은 비물질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법적보호에 있어서 한국은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로 나뉘고 중국은 국가·성(省)·시(市)·현(縣) 등 4급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제로 형성되어가고 있다.

둘째, 한국 무형문화재의 지정범위는 기술과 예능을 중심으로 하고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도구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지정범위는 기·예능은 물론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유형의 도구와 공간적 환경, 언어와 신앙, 생활관습 등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의 지정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보존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시·도의 조례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만 중국은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우선 성급(省級) 문화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만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으로의 신청이 가능해 진다.

넷째, 한국에서는 지난 1964년 12월 종묘제례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된 이래 2007년 10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113개 종목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중국은 2006년 5월에 발표된 총 518개 종목이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다섯째, 한국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특징은 원형보존주의, 중점보호주의, 국가 주도 전수교육제도, 활용주의 등 4가지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진실성(眞實性) 원칙, 정체성(整體性) 원칙, 이인위본(以人爲本) 원칙, 지속가능성(可持續性) 원칙, 합리이용(合理利用) 원칙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중 두 나라 무형문화유산 보호특징에서의 차이점들은 두 나라 무형문화유산 보호 대상의 범위와 관리원칙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특히 위에서 언급한 지정범위의 상이점은 한국 기존의 무형문화재 정책에서 무형문화유산 정책을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과 관련하여 수용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정책은 그 자체보다 그것을 지키고 따르며, 효과적인 보존·전승의 정신을 견지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이 차원 높은 사회에서 우수한 정신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밑거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시공의 제약이 점점 사라지는 세계화속에서 각국은 이미 문화경쟁을 넘어 문화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른바 문화패권의 시대이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지리·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한·중 두 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특히 이러한 비교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보다 많은 후속 연구들의 보다 깊은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자국문화의 발전뿐 아니라 세계인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하여 세계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미경(2005). 「중요무형문화재 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혜(2005). 「한·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구(2005).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개편방향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순(2003).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전통무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장열(2005). 「한국 무형문화재정책 연구: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수진(2004).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그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烏丙安(2006). 「申報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作名錄的關鍵問題」.
- 烏丙安(2006). 「非物文化遺產保護的科學管理及操作規程」.
- 朱兵(2006). 「背景, 問題與思路 - 關於我國非物質文化遺產立法的思考」.
- 劉魁立(2004). 「論非物質文化遺產保護整責性原則」.
- 손봉숙(2006).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무엇을 남길 것인가」. 『국회보 통권 476호』.
- 임돈희(2004).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제도와 그 의미」. 『비교민속학 제26집』.
- 임돈희(2006). 「국제무형문화유산학술지 발간의 의미」. 『민속소식』 128호.
- 임돈희·임장혁(1997).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의 과제」. 『문화재』.
- 王寧(2004). 「談中國口頭非物質遺產價值評定原則與保護的方法」. 『非物質文化遺產保護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 문화재청(2006).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 재창조 가이드라인』.
- 문화재청(2002). 『문화재연감』.
- 손봉숙(2006).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장열(2005).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 관동출판사.
- 한국유네스코(1998).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1차 유네스코 국제연수 워크샵 자료집』.
- Yang, Jong-Sung(2003). 『Cultural Protection Policy in Korea: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Living National Treasures』. Jimoondang Seoul.

- 王文章(2006).『非物質文化遺產概論』. 文化藝術出版社.
- 苑利(2002).『20世紀中國民俗學經典民俗論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中國非物質文化遺產研究中心(2006).『中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鄧開發全書』. 長城出版社.
- 中國非物質文化遺產研究中心(2007).『中國非物質文化遺產普查手冊』. 文化藝術出版社.
- 中國藝術研究院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國家中心(2005).『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作手冊』.
- 周和平(2007).『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圖典』. 文化藝術出版社.
- 문화재청(2006. 06). “문화재보호법”.
- 유네스코(UNESCO)(2003).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유네스코(UNESCO)(1998).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 國務院辦公廳(2005).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 대표작 신청과 평가확정에 관한 감정 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作申報評定暫行辦法)”.
- 國務院辦公廳(2005). “우리나라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작업에 관한 의견(關於加強我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的意見)”.
- 國務院(2006). “국무원의 제1차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명록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公布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的通知)”.
- 國務院(2006). “제1차 무형문화유산 국가급 명록(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
- 國務院(2006).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임시실행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保護鄧管理暫行辦法)”.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http://www.fpcp.or.kr>
- 한국 문화재청: <http://www.ocp.go.kr>
- UNESCO: <http://www.unesc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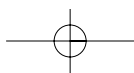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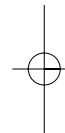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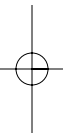
中國非物質文化遺產網: <http://www.ihchina.cn>

中國保護知識產權網: <http://www.ipr.gov.cn>

中國文化部: <http://www.cent.gov.cn>

中國國家知識產權局: <http://www.sipo.gov.cn>

논문투고일	2008년	2월	29일
심사일		3월	5일
심사완료일		3월	21일



Abstract**A Comparative Study on Protection Polici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between Korea and China**

Zhang Mei Na
Sungkyunkwan University

A fact that culture comes to exert the most important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cultural century is not new. In particular, It's safe to say that the interest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recently international flow. And, the interest of non-Western countries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higher than the Western countries.

This study carried out the research on protection polici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f Korea and China, which is multiracial. Korea's protection policy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as arrang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s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had been enacted in 1962. Thus, the protection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has been carried out in the national dimension, and now became the advanced level enough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pay attention. On the other hand, from having joined in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UNESCO in 2004, China accelerated the protection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substitut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the name of the racial-private culture, which had been included in the existing culture protection law. Korea and China are the countries that are involved in the same Orient, but have mutually different protection background and real situation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us, through this research, it aimed to seek for the better protection policies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two countries hereafter by analyzing the protection policies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two countries and by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tection policies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two countries.

This study analyzed the protection policy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two countries after examining the present status of protection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two countries, which are now being protected in the national

dimension, based on the background and formation process of protection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Korea and China.

The protection policy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eds to be the one that aims to observe and keep, and to check the spirit of effectiv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That is because the protection policy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the base manure as the policy, which can form the excellent spiritual culture in high-dimensional society.

The 21st century is the one of culture. Amid globalization in which the restriction to time and space gradually disappears, each country is experiencing the culture war, with already having surpassed the culture competition. It is the so-called era of culture hegemony. In the midst of this flow, it tried to have the opportunity that inspects the protection policies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both Korea and China, which show difference while having a close relationship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Especially in light of the reality that this research is not performed much, the more follow-up studies need to perform the deeper comparative analysis. And, this is thought to be capable of contributing not only to the development in own country's culture, but also to the development in world culture by offering new imagination to the global people.

keywo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무형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문화유산), Protection Policy(보호 정책), Traditional Culture(전통문화), Inheritance(전승)